

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0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상호(법인명)		
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전화번호		
	본점 사무소 소재지			
	보유업종 및 등록번호			

「골재채취법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
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신고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골재채취업 등록증 2. 자산평가보고서(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4. 골재채취용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. 국가기술자격자 명단	수수료 「골재채취법」 제48조의2제2호 에 따른 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2. 국가기술자격증(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